

-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
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-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구미시 송정동 34-3 정원종합법률사무소
김희철 외 89인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김택호

3. 청원사유(내용)

-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SALEM 통신대가 1991년부터 월1회 정기 정점으로 대체하는 무인기통신기지로 바뀌면서 당초 10여명의 상주 군인들이 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.
- 1953년 1차, 1961년 2차에 걸쳐 대구 주둔 미8군의 통신기지(왜관 캠프 캐롤에서 관리)로 확보한 면적은 6,832평으로, 우리나라의 방송 및 이동통신 5개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 427평에 비해 과도 점유하고 있음.
- 특히 미군 통신탑이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(976m) 꼭대기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어, 일제시대 때, 전국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게했던 암울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음.
- 따라서 불필요한 부지는 반환하고, 폐시설물은 철거하며, 정상에 설치된 통신탑은 정상 아래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함.

4. 참고사항

-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, 주둔군지위예관협정 제2조, 제3조, 제4조

5. 검토의견

- 구미경제실천시민연합 김희철 외 89명으로부터 『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청원』은
-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SALEM 통신대가 1991년부터 월1회 정기정검으로 대체하는 무인기통신기지로 바뀌면서 당초 10여명의 상주군인들이 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,
- 1953년 1차, 1961년 2차에 걸쳐, 대구 주둔 미8군의 통신기지(왜관 캠프 캐롤에서 관리)로 확보한 면적은 6,832평으로, 우리나라의 방송 및 이동통신 5개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 427평에 비해 과도 점유하고 있으며,
- 특히 미군 통신탑이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(976m) 꼭대기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어, 일제시대 때, 전국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게 했던 암울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며,
- 구미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
국방부 및 미8군에 대하여, 1993년에 4회에 걸쳐 미 사용부지 반환 및 폐시설물 정비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,

94년 2월에 국방부에 재차 요청한 결과

군사시설 반환에 대하여 『관련 미군시설의 해제반환을 미측과 협의중이나 그 시설이 해제 반환되는 경우에도 계속 군사시설로 활용될 것인지 폐쇄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된바 없음』을 통보 받은 이후,
진전된 회답을 받지 못했으며, 폐시설물들 또한 계속 방치되어 왔음.

-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2월 10일에 시설물철거 및 정비협의 차 미8군 캠프캐롤을 직접 방문한 결과
금년 4월경에 건물 12동중 9동은 철거하고 3동은 정비하며, 1동의 건물 신축 및 타워 1개소 설치계획을 청취하였고.

- 지난 2월 23일에는 『금년 4월 정비계획에 대한 사실확인 및 시설물 철거 정비 및 반환』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
회신내용은 『우리부는 해제반환 및 시설물철거.공사계획 관련 현지 합동 실사 등 주한미군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,
SOFA 제2조에 의하여 주한미군에 공여된 공여지역에는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』라고 통보 받았음.

- 위와 같이, 우리시 소유재산이면서도 이용 및 관리권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는 것은, 반환의 전제가 되는 군사시설 제한구역 해제요구권한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미군에 무상 임대한 국방부 소관이면서도,

한미주둔군지위협정 자체가 한국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 미군에게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.

-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있는 타 시.군 또한
지방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제.반환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,
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음.

-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
불필요한 부지는 반환하고, 폐시설물은 철거하며, 정상에 설치된 통신탑은 정상 아래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청원의 건을

-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